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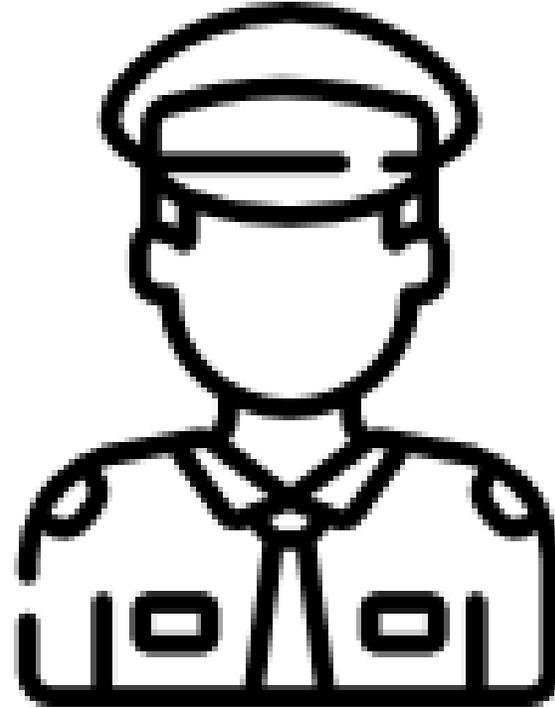
정치법제위원회 (국민청원 체계화 및 법제화)

사회의견 수렴을 위한
국민청원 체계화 및 법제화에
대한 국민청원위원회 법률제정안

발표자 이 연 희



법



공권력



분야별 청원
청와대

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뉴스 ^{추천순} 정책정보 국민소통 광장 청와대 알림 ^{답변된 청원} 청와대 관람 신청

— 답변완료 —

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.

참여인원 : [413,924명]

카테고리 육아/교육 청원시작 2018-07-22 청원마감 2018-08-21 청원인 naver-***

● 청원시작 ● 청원진행중 ● 청원종료 ● **답변완료**

국민청원답변 라이브
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 사고 대책 마련 촉구' 청원답변

추천순 TOP 5

1. 스티븐유(유승준)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. 국민...
2.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
3.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...
4.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(유튜버 **...
5.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강력 처벌해...

답변된 청원

1. 시스템 자체의 문제

2. 시스템 존속여부의 불분명

1. 시스템 자체의 문제

ㄱ. 편법을 사용하면 한 청원에 중복투표 가능

ㄴ. 청원의 수준 문제

ㄷ. 청와대 측 답변의 실효성 부족

2. 시스템 존속 여부의 불분명

ㄱ. 현재 국민청원 시스템은 법제화 X

ㄴ. 정권 교체에서 받게 되는 영향



영구화



법제화

국민청원
시스템



체계화

제1장 개요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국민청원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어떤 희망 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 청원을 수렴하고 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확장시키고 사회문제 인식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민청원위원회의 설립과 중립성)

-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청원 보호와 응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청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모든 정당에 대해 공평성과 비당파성을 갖고 국민의 청원에 응답하되, 각각의 시각과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여 수행한다.

제3조(국민청원위원회의 독립성)

국민청원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하여 수행한다.

제 2장 위원회 구성과 운영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.
 1. 국회가 선출하는 4명(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)
 2.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(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)
 3.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4명(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)
-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.

제6조 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위원 지명권을 가진 사람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
- ③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.

제7조 (상임위원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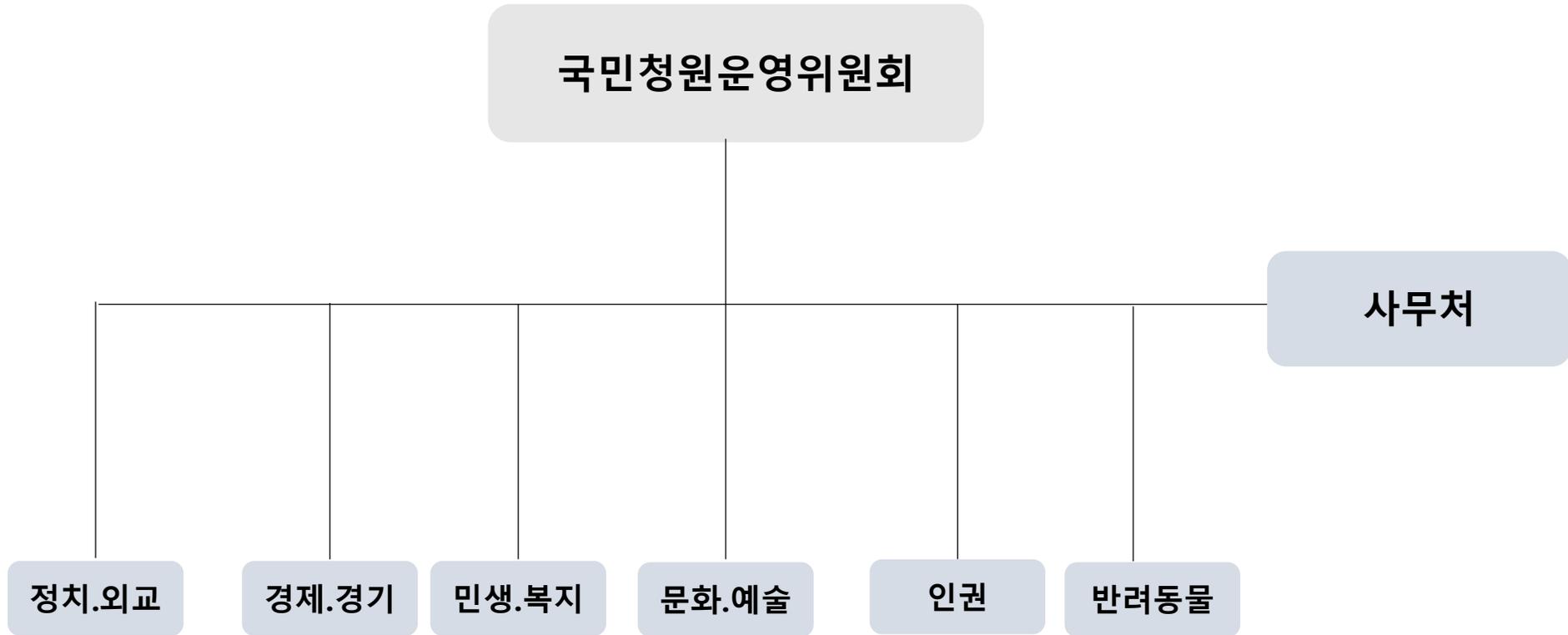
-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·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·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 (사무처)

- ① 부서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처를 둔다.
-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,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9조 (부서)

- ① 각 부서는 정치외교부, 경제경기부, 민생복지부, 문화예술부, 인권부, 반려동물부로 이루어진다.
- ② 각 부서에 부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- ③ 부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 부서의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

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

제10조 (업무)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각 부서(정치외교, 경제경기, 민생복지, 문화예술, 인권, 반려동물)에서 청원확인
2. 각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청원이나 주제에 알맞지 않은 청원은 판단 후 배제
3. 각 부서에서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운영위원회로 제출
4.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후 각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 경우 청원에 대한 의견 및 답변을 작성
5. 각 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은 각부서의 부장이 국민에게 공표
6. 운영위원회의 판단 후 각 부서에서 답변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에 맞는 국가기관이 이행
7. 국가기관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답변 및 의견 제출
8.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표
9. 각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청원이나 범주에 없는 청원은 사무처에서 재정리 후 판단하여 각 부서에 제출

제11조 (요청)

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청원 누리집을 통해 요구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 (요청의 삭제)

위원회는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요청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글을 삭제할 수 있다.

1.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일 때
2.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 때
3. 비속어, 성적 단어 등 누리집 사용자들의 정신건강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때
4. 그 외 국민청원의 취지와 어긋날 때

제13조 (삭제 사유의 공지)

위원회는 글을 삭제할 때 사유를 첨부한 후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.

제14조 (글의 게시)

- ① 누리집에 올라온 글은 일정 수 이상의 청원 동의가 있어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다.
- ② 위에 따른 게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5조 (자료제출 및 사실조회)

- ①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각 부서의 부장은 청원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국민청원운영위원회는 청원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
제16조 (국가기관 등과의 협의)

- ① 국민청원운영위원회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관계기관 등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7조(정책과 관행의 개선)

- ①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원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과 관행의 의견을 국가기관에 표명할 수 있다.
- ② 상책과 관행의 개선을 위해 국민성원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었을 경우, 위원장이 의견서를 국가기관에 전달한다. 과반수를 넘지 못한 안건의 경우, 각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한다.
- ③ 의견서를 보내기 위한 주제 선정은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재량으로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그 의견서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국가기관은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서의 이행계획을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상임위원회는 국민에게 통지 받은 청원서를 반복하여야 한다.
- ⑦ 청원기관은 국민에게 받은 청원을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9조 (부서)

- ① 각 부서는 정치외교부, 경제경기부, 민생복지부, 문화예술부, 인권부, 반려동물부로 이루어진다.
- ② 각 부서에 부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- ③ 부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 부서의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장 개요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국민청원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어떤 희망 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 청원을 수렴하고 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확장시키고 사회문제 인식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민청원위원회의 설립과 중립성)

-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청원 보호와 응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청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모든 정당에 대해 공평성과 비당파성을 갖고 국민의 청원에 응답하되, 각각의 시각과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여 수행한다.

제3조(국민청원위원회의 독립성)

국민청원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하여 수행한다.

제1장 개요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국민청원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어떤 희망 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 청원을 수렴하고 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확장시키고 사회문제 인식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민청원위원회의 설립과 중립성)

-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청원 보호와 응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청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모든 정당에 대해 공평성과 비당파성을 갖고 국민의 청원에 응답하되, 각각의 시각과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여 수행한다.

제3조(국민청원위원회의 독립성)

국민청원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하여 수행한다.

제1장 개요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국민청원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어떤 희망 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 청원을 수렴하고 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확장시키고 사회문제 인식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민청원위원회의 설립과 중립성)

-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청원 보호와 응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청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모든 정당에 대해 공평성과 비당파성을 갖고 국민의 청원에 응답하되, 각각의 시각과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여 수행한다.

제3조(국민청원위원회의 독립성)

국민청원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하여 수행한다.

제9조 (부서)

- ① 각 부서는 정치외교부, 경제경기부, 민생복지부, 문화예술부, 인권부, 반려동물부로 이루어진다.
- ② 각 부서에 부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- ③ 부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 부서의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

제10조 (업무)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각 부서(정치외교, 경제경기, 민생복지, 문화예술, 인권, 반려동물)에서 청원확인
2. 각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청원이나 주제에 알맞지 않은 청원은 판단 후 배제
3. 각 부서에서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운영위원회로 제출
4.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후 각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 경우 청원에 대한 의견 및 답변을 작성
5. 각 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은 각부서의 부장이 국민에게 공표
6. 운영위원회의 판단 후 각 부서에서 답변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에 맞는 국가기관이 이행
7. 국가기관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답변 및 의견 제출
8.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표
9. 각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청원이나 범주에 없는 청원은 사무처에서 재정리 후 판단하여 각 부서에 제출

제11조 (요청)

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청원 누리집을 통해 요구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 (요청의 삭제)

위원회는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요청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글을 삭제할 수 있다.

1.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일 때
2.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 때
3. 비속어, 성적 단어 등 누리집 사용자들의 정신건강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때
4. 그 외 국민청원의 취지와 어긋날 때

제13조 (삭제 사유의 공지)

위원회는 글을 삭제할 때 사유를 첨부한 후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.

제14조 (글의 게시)

- ① 누리집에 올라온 글은 일정 수 이상의 청원 동의가 있어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다.
- ② 위에 따른 게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5조 (자료제출 및 사실조회)

- ①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각 부서의 부장은 청원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국민청원운영위원회는 청원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
제16조 (국가기관 등과의 협의)

- ① 국민청원운영위원회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관계기관 등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7조(정책과 관행의 개선)

- ①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원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과 관행의 의견을 국가기관에 표명할 수 있다.
- ② 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위해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었을 경우, 위원장이 의견서를 국가기관에 전달한다. 과반수를 넘지 못한 안건의 경우, 각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한다.
- ③ 의견서를 보내기 위한 주제 선정은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재량으로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그 의견서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국가기관은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서의 이행계획을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상임위원회는 국민에게 통지 받은 청원서를 발표하여야 한다.
- ⑦ 청원기관은 국민에게 받은 청원을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

효율적 & 실제적
문제 해결



국민청원의 질
근본적 상승



정치적 중립성
보장



국민과 공직자
단절감 감소

THANK
YOU

발 표 자 이 연 회